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8
----------	-----

2019. 10. 25. (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등 6인
- 나. 발의일자: 2019년 10월 8일
- 다. 회부일자: 2019년 10월 11일
- 라. 상정일자: 2019년 10월 17일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연구용역 관리원칙(안 제4조)

-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10조)
-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 수립(안 제11조)
-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안 제12조)
- 정책연구용역과제 변경(안 제13조)
- 정책연구용역 실명제(안 제14조)
-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안 제15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공개·활용·관리(안 제16조 ~ 안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부터 안 제10조에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음
- 또한 안 제12조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을 규정하고, 안 제 14조에는 정책연구용역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현안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과 추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질 향상과 연구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개별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교육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시설계용역, 감리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관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 선정
2. 정책연구용역 주요내용의 변경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심의 대상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절차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시·도교육청,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3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사업비의 증액

2. 정책연구용역 과제 내용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는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책연구용역 연구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그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05호, 2018. 11. 27., 일부개정]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 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

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